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대한소방공제회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도 회원 자격 부여〉
■ 한병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348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한병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1. 18.
3. 회 부 일 : 2025. 11.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소방공제회는 소방공무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현재 회원자격은 법률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고 있음.

그러나 소방업무의 특수성과 위험성으로 인해 소방공무원과 함께 긴밀히 협력하거나 유사한 근무환경에 놓인 다양한 인력 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체계상 이들을 회원으로 포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한소방공제회의 지원과 혜택이 제한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대한소방공제회법 제7조(회원의 자격) 제2항제5호에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을 신설하여 제도 환경 변화와 소방 관련 조직 개편 및 신규 인력 활용 상황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를 통해 대한소방공제회가 보다 다양한 구성원을 포용함으로써

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공제회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소방공무원 및 소방분야 유관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5호).

Ⅲ. 검토의견

1. 대한소방공제회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도 회원 자격 부여

개정안은 대한소방공제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도 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제2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회원의 자격) ① (생략) ② 일반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담금을 낸 사람으로 한다. 1. ~ 4. (생략) <u><신설></u>	제7조(회원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4. (현행과 같음) <u>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u>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한소방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함)는 소방공무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제기관으로 회원의 자격은 「대한소방공제회법」 제7조에 규정되어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공제회 회원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및 퇴직회원으로 구분되는데, 일반회원은 소방공무원, 소방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했던 공무원 및 공제회 임직원으로 규정되어 있음(제7조).

<대한소방공제회 회원 현황>

('25.11.30. 기준 / 단위: 명)

구 분	인원(명)	자격(법 제7조)
일반회원	61,858	1. 「소방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소방공무원 2.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3. 소방업무를 담당하다가 일시적으로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4.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특별회원	6,778	1. ~3.에 해당하는 사람 중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는 사람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1. 일반회원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담금을 내지 않는 사람 2. 일반회원 및 제1호의 특별회원으로서 공무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
퇴직회원	1,919	1. ~4.에 규정된 직에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일반회원으로 있던 자가 퇴직하고 공제회가 시행하는 급여에 가입하여 공제회 회원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
계	70,555	

(자료: 대한소방공제회)

개정안은 소방공무원과 함께 긴밀히 협력하거나 유사한 근무환경에 놓인 다양한 인력 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회원으로 포함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는 점을 개선하고자 회원의 자격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을 신설하려는 것임.

<일반회원 자격: 현행과 개정안의 내용 비교>

현행	개정안
1. 「소방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소방공무원	
2.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3. 소방업무를 담당하다가 일시적으로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4.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신설>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공제회의 회원이 되면 퇴직급여 등 공제회가 운영하는 각종 급여 제도에 가입할 수 있고, 공제회가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¹⁾.

소방업무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재난·위급상황 현장에서 고도의 위험과 긴급성을 감수하고 전문적인 구조·구급·진압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특성이 있는데,

재난 현장에서 소방활동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방공무원 등 소방대원뿐만 아니라 소방 관련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인력, 소방대원의 급식을 담당하는 인력, 소방서 등의 시설을 관리하고 환경미화를 담당하는 인력 등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노력 역시 필요함.

1) 공제회 회원 대상 주요 지원사업 개요는 [참고] 참조

실제로 현재 소방청 및 시도 소방본부에서 소방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약 1,300명으로 나타남.

<소방청 및 시도소방본부 소속 공무원 현황>

(‘25.11.30. 기준 / 단위: 명)

총 계	행정	연구	부속실	구내식당		시설관리 등		기타
				영양사	조리사	시설관리	환경미화	
1,330	29	18	99	113	557	136	288	90

(자료: 소방청)

일반적으로 공제회 회원은 부담금을 납부함으로써 실질적인 회원의 권리를 획득하는데²⁾, 현행법은 공제회 회원 자격을 소방공무원 및 소방업무 담당 공무원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소방 분야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인력을 포함하지 못하여 소방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간의 형평성 문제 및 사기 저하가 우려될 수 있음.

이에 소방분야 공무원 등 소방공무원과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도 공제회에 가입 기회를 부여하여 소방 업무 종사자 간의

2) 「대한소방공제회 정관」

제4조(회원의 자격) ①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및 퇴직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6조제1항의 부담금을 낸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2.1.1)

1. 「소방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소방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으로 소방기관에서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일시적으로 다른 업무를 담당한다고 인정하는 사람
4.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제6조(회원의 권리·의무) ① 회원은 정해진 부담금을 내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② 회원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급여·대여 및 복지시설의 이용 등 이익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③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원에 따라 공제회를 탈퇴한 경우에는 낸 부담금의 반환과 정해진 부가금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제회의 재정 기반을 강화³⁾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참고로, 소방청은 2023년 3월에 시행한 대한소방공제회 감사에서 소방 업무에 종사하는 다양한 직원이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라는 권고를 하였고,

대한소방공제회의 회원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소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공제회 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찬성하는 결과가 도출 되었음⁴⁾.

또한, 경찰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등 직역별 공제회도 회원자격으로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⁵⁾.

개정안에 대하여 소방청은 대한소방공제회는 회원자격을 소방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타 공제회 대비 가입 범위가 협소하므로 대한소방공제회법 개정을 통해 회원자격 범위를 확대하여 회원 복지 수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3) 현재 공제회는 전국 소방공무원을 중심으로 약 6만 명 수준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나, 소방 관련 공무원 등 유사 인력까지 단계적으로 포괄할 경우 적립금 규모와 기금 운용 여력이 확대되어 중장기적으로 대한소방공제회의 재정 건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방청은 설명함.

4) 공무원에게 회원자격 부여 관련 공제회 회원과 대의원 대상 의견조사 실시 결과

- 회원 대상 의견조사(‘23.6.14.) 결과 : 찬성 50.2% / 반대 49.8%
- * 전체회원 대상 설문시행 10,662명 참여(18.12%)
- 대의원 의견조사(‘23.9.13.) 결과 : 참석인원 19명 중 찬성 14표, 반대 5표

(자료: 대한소방공제회)

5) 주요 공제회의 회원자격 규정은 [참고] 참조

문 의 처

02)6788-5351

참고 1

공제회 회원 대상 주요 지원사업 내용

(자료: 대한소방공제회)

□ 공제사업

- (급여제도) 회원의 재산형성 등 생활안정을 위한 급여제도 운영

(2025.11 기준)

구분	퇴직급여	분할지급퇴직급여	목돈수탁급여
개요	퇴직 시까지 불입 가능한 장기 복리 적금	퇴직급여를 최장 30년 까지 분할하여 수령	고금리 예금
가입자격	일반회원 자격을 갖춘 사람	일반회원 (퇴직 시 가입 가능)	일반회원, 퇴직회원
가입기간	퇴직 시 까지	5 ~ 30년(5년 단위)	1, 2, 3년
현재금리	5.17%	4.78%	3.78 ~ 3.85%
특징	저율과세(소득세법 63조) 금융소득종합과세 비대상(소득세법 14조3항)		-

※ 퇴직급여와 목돈수탁급여는 가입금액 담보대출 가능(가산금리 최대 0.3%pt)

- 퇴직급여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공상을 당한 경우 및 출산과 혼인 시에 대한 부조금(순직/사망/공상/출산/혼인) 혜택 제공

□ 지원사업 및 복지서비스

- (특별위로금 지원사업) 순직·공상자 특별위로금 지원*

- 화재 진압 등 현장업무 중 순직하거나 90일 이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등의 중상을 당한 경우

* (순직자) 소방위 5호봉 18개월 분, (공상자) 소방위 5호봉 3개월분

- (복지서비스 운영) 직영호텔 회원 우대 운영과 국내 주요리조트 회원제 혜택 및 다수의 제휴복지서비스 제공

- 직영호텔(대천파레브 72객실), 리조트(소노,한화,리솜) 회원가 제공 및 지역별 숙박시설 등 97개소 제휴협약을 통한 회원 우대 중

참고 2

주요 공제회 회원자격

구분	회원자격 범위
① 경찰 공제회	법 제7조(회원의 자격) ① 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3.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정관 주요내용> 정관 제4조(회원 및 가입자격) 제2항 제3호 3.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 ②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회비)을 낸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② 군인 공제회	법 제7조(회원의 자격 및 권리의무) ①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제회의 일반회원이 될 수 있다. 1. 「군인사법」에 따른 하사 이상의 군인 2.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정관 주요내용> 정관 제4조(자격)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제회의 일반회원이 될 수 있다. 3. 국방부분부와 국방부 소속기관인 국방홍보원, 국방전산정보원의 공무원. 다만, 국방부 일반직 공무원 중 정부시책에 의하여 타 행정부처에 교류 근무하는자에 대하여는 교류기간 중에도 회원자격이 유지된다. 이 경우 교류기간 종료 후 미복귀 또는 전속조치 등의 사유 발생 시는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4. 한국국방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국방연구원의 임·직원 5. 국방대학교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방대학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 6. 공제회의 임·직원 7. 방위사업청의 공무원

구분	회원자격 범위
	8.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 9.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직원 10. 병무청의 공무원 11.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의 임·직원 12. 국방전직교육원법에 의한 국방전직교육원의 임·직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 2. 「병역법」에 따른 현역 및 예비역 병(兵) ④ 공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단체회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단체의 회원 자격 여부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사관학교·해군사관학교·공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국군조직법」 및 「육군부사관학교령」에 따른 육군부사관학교, 「국방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방대학교의 장학·발전기금 목적으로 설립된 각 재단법인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된 국방 관련 단체 3. 그 밖의 국방 관련 단체 <정관 주요내용> 정관 제4조(자격)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목돈의 위탁 증식을 원하는 자는 공제회의 단체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그 위탁관리기간에 한한다. 1. 사관학교설치법에 따른 육군사관학교·해군사관학교·공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설치법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국군조직법 및 육군부사관학교령에 따른 육군부사관학교, 국방대학교설치법에 따른 국방대학교의 장학·발전기금 목적으로 설립된 각 재단법인 2. 제2항 각호의 1 또는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된 국방 관련 단체 3. 그 밖의 국방 관련 단체 4. 제2호 및 제3호에 의해 회원이 될 수 있는 단체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구분	회원자격 범위
③ 과학 기술인 공제회	법 제6조(회원의 자격) ①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회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의 임직원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의 임직원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임원·연구원 및 그 소속 직원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임직원 5.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개설된 기술사사무소의 기술사 및 그 소속 직원과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사회의 회원 및 임직원 6.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임직원 7.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임직원 8.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의 기관·사업자 및 법인 등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10.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정관 주요내용> 정관 제4조(회원) ③ 법 제6조(회원의 자격) 제2항제10호에 따라 정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공제회 임직원 및 공제회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회사의 임직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학기술관련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구분	회원자격 범위
	나.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국가기술표준원 다. 기상청, 특허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3. 제2항제3호의 기업부설연구소에 근무하는 회원으로서 동일 법인에 다른 부서로 소속이 변경되는 사람 중 계속 공제회의 회원으로 있기를 희망하는 사람 4.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신고된 전문연구사업자의 임직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학기술관련 기업의 임직원 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첨단기술기업 및 같은 법 제9조의3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기업 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6.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사업수행 실적을 제출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을 영위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임직원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프론티어사업단, 융합사업단, 글로벌사업단 등의 임직원 8.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의 임직원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다가 퇴직 등의 사유로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④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회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초의 부담금을 납입한 날에 공제회의 회원이 된다.
④ 지방행정 공제회	법 제7조(회원의 자격) ①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2. 지방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3. 지방행정사무를 담당하다가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4.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구분	회원자격 범위
	<정관 주요내용> 정관 제4조2(회원가입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제회의 일반회원이 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2. 행정안전부 및 행정안전부 직할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3.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기타 타 부처에 파견근무하는 공무원 4. 법 제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 및 행정안전부 직할기관 또는 시·도, 시·군·구에서 근무하는 회원으로서 일시적으로 정부의 다른 기관으로 소속이 변경되는 공무원 중 계속 공제회원으로 있기를 희망하는 자 5. 공제회의 임직원 ② 공제회의 특별회원은 공제회의 회원으로 있던 자가 정년 또는 퇴직하고, 공제회가 시행하는 급여에 가입하여 공제회의 회원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명된 자는 특별회원이 될 수 없다.

참고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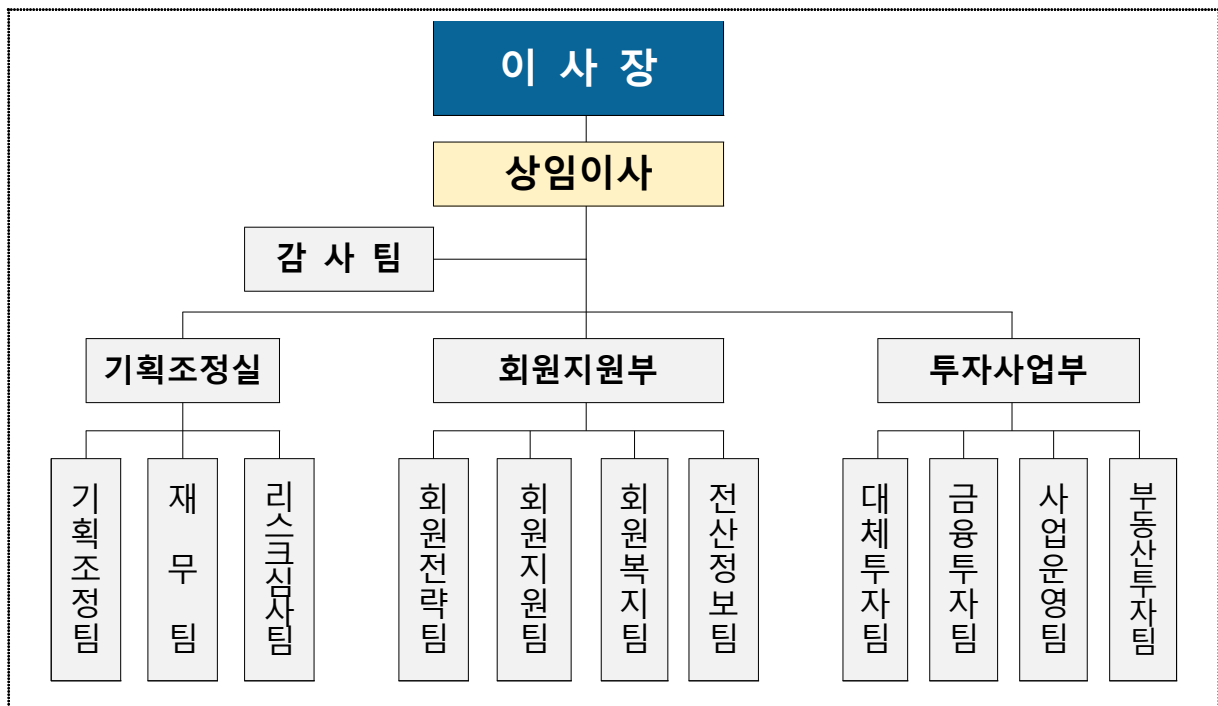
대한소방공제회 일반 현황

1 설립 근거

- 「대한소방공제회법」 제1조 (목적) 등
 - '84. 10. 29. 사단법인 설립 → '91. 11. 30. 설치법 제정
 - ※ 유사 설치법 공제회 : 교직원, 행정, 군인, 경찰

2 기구 및 정원

- 기 구 : 1실 2부 12팀



- 정 원 : 47명 (임원 2명, 직원 45명)

(단위: 명)

구 분	계	이사장	이사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정 원	47	1	1	4	12	9	7	10	3

3

주요 기능

공제사업	▪ 퇴직/탈퇴급여 ▪ 분할지급 퇴직급여	▪ 생활안정자금 ▪ 순직/사망/공상/출산/혼인 급여
지원사업	▪ 순직 공상자 위로금 지원 ▪ 기부 유치 및 지원	▪ 회원 복지 증진 연구 ▪ 제휴복지
기금조성	▪ 사업투자(부동산) 운용 ▪ 주식 투자 운용	▪ 채권 투자 운용 ▪ 대체 투자 운용

4

회 원

○ 일반회원 : 62,107명 (가입률 91.9%, '25.6월 말)

일반회원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담금을 낸 사람 1. 소방공무원 2. 소방기관에서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공제회 임직원
특별회원	1. 일반회원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담금을 내지 않는 사람 2. 일반회원 및 제1호의 특별회원으로서 공무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
퇴직회원	1. 일반회원으로 있던 자가 퇴직하고 공제회가 시행하는 급여에 가입하여 공제회 회원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

< 최근 5년 가입 회원 수 추이 >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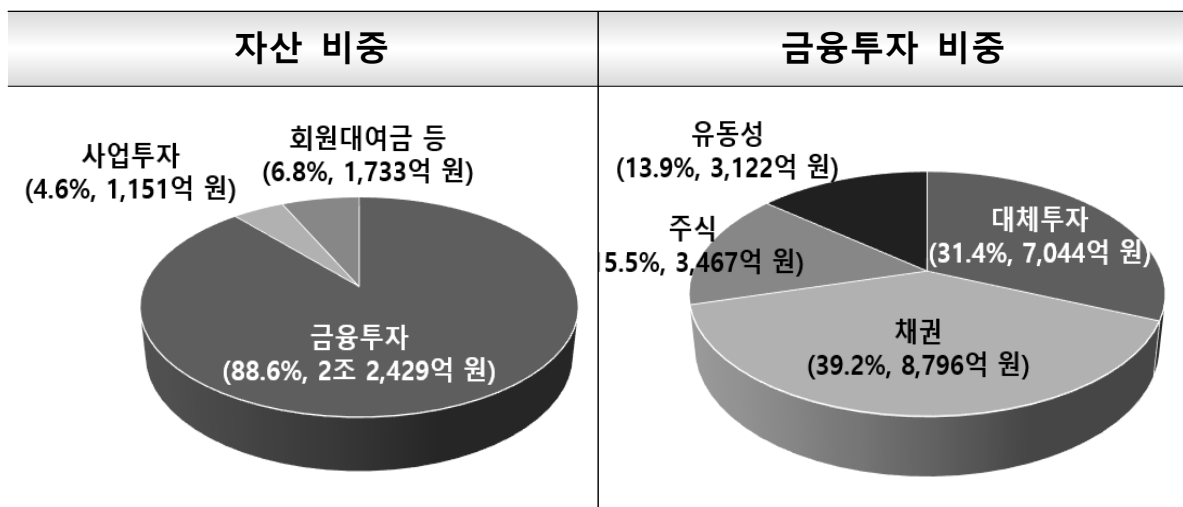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6월
소방공무원 수	61,623	64,902	66,639	67,049	67,586
가입회원 (가입률)	54,100 (87.8)	57,147 (88.1)	59,578 (89.4)	61,082 (91.1)	62,107 (91.9)

5

자 산 : 2조 5,313억원

(단위: 억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총 자 산	15,286	19,207	25,313
전년대비	874	3,921	6,106
증 감 율	6.1%	25.7%	31.8%



6

'25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 원, %)

수 입		지 출	
계	1,123,566(100.0)	계	1,123,566(100.0)
• 퇴직급여수입	264,000(23.5)	• 급 여 금	944,270(84.0)
• 목돈수탁급여수입	720,000(64.1)	• 투자자산금	161,334(14.4)
• 이 자 수 입	130,038(11.6)	• 사 업 비 및 기타	14,598(1.3)
• 사 업 수 입 등	9,528(0.8)	• 인 건 비	3,364(0.3)